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3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발 의 자: 박 석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구미경, 김규남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문성호, 박춘선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윤기섭, 이병운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환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고령화 및 가구원 수 감소로 의료적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요양병원 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.
- 현행 「서울시 도시계획조례」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‘노유자시설’은 허용, ‘의료시설’은 불허하고 있는데, 노유자시설인 ‘노인의료복지시설’에 포함되었던 요양병원은 2011년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의료법」 개정으로 '의료시설'로 변경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었음.
- 타법 개정으로 인해 본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된 요양병원의 증축 및 신축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규제 상황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요양병원을 추가함(안 제2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, 「노인 복지법」, 「의료법」 등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(「의료법」 제3조3호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~ 10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7조(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「<u>건축법 시행령</u>」 별표 1 제9의 <u>의료시설 중 요양병원</u> (「<u>의료법</u>」 제3조3호에 따른 <u>요양병원을 말한다</u>)</p>